동포 체류자격 통합 관련 질의응답(Q&A)

1. 동포 체류자격(H-2, F-4)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통합하는 이유는?

- 동포의 출신국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동포 간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동포들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 누가 재외동포(F-4) 자격을 받을 수 있나요?

- 국적에 상관없이 외국국적동포임이 입증되면 누구나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거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로 소득, 학력, 경력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3. 새롭게 추가된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 허용 직업은 무엇이며, 어떻게 결정이 되었나요?

- 기존에 제한된 단순노무 직업 중 '**건설 단순 종사원, 광업 단순 종사원, 수동 포장원, 수동상표 부착원, 주유원, 매장 정리원, 주차 안내원, 자동판매기 관리원,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등 총 10개 직업*의 취업이 허용됩니다.
- 법무부는 '취업비자 사전 공표제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24.12. 이민정책연구원)', '국내 체류 동포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25.11. 문체부 시행)', 외국인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25.12.) 논의를 통해 산업계 인력난과 국민 인식 결과, 관계 부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하였습니다.

4. 나머지 제한된 직업(37개)은 언제 풀리나요?

- 나머지 직업은 국민 일자리 등을 고려하여 산업계의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5.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일하던 중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하게 되면, 기존에 일하던 곳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재외동포(F-4)에게 취업이 제한되는 직업이 아니면 별도의 허가가 없어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 다만, 청소원이나 경비원 등 재외동포(F-4) 제한 직업에서 일하는 방문취업(H-2) 자격자가 재외동포(F-4) 자격변경 후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직업으로 계속하여 근무를 희망하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일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취업개시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시 자진하여 신고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취업개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됩니다.

5-1. 재외동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할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재외동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재외동포 통합신청서, 여권 및 사본, 거소신고증, 단순노무 업종 취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서류(건강보험 가입내역, 소득금액증명원 등),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등입니다.

6. 이제 방문취업(H-2) 비자는 새로 받을 수 없나요?

- 2026.2.12.부터 방문취업(H-2) 사증 신규 발급은 중단됩니다.
- 앞으로 동포들은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현재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연장받을 수 있나요?

- 기존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는 본인의 체류기간 상한까지 정상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체류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8.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시 수수료 혜택이 있나요?

- 방문취업(H-2) 자격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 시에는 2027.12.31.까지 자격변경 수수료(10만 원)가 면제됩니다.
- 이는 동포 체류자격 통합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거소신고증 발급 수수료(3만 5천원)는 거소증 발급비용으로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그러나 그밖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신청의 경우에는 자격변경 수수료와 거소신고증 발급 수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9 한국어 능력에 따라 체류기간이 다르게 부여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 한국어 능력 입증은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26. 12. 31.까지는 현행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수준을 유지하고, ’27. 1. 1.부터 ‘28. 12. 31.까지 2단계 수준을 적용하며 ’29. 1. 1.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수준을 이수해야 합니다.
- 한국어 능력을 입증하거나 면제*된 사람에게는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사증은 2년)합니다.

*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만 60세 이상인 사람, 만 13세 이하인 사람, 국내 초·중·고교 재학자 등

- 한편, 한국어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수강하면 2년 이내, 등록하지 않으면 1년 이내의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10. 사회통합프로그램 외에 한국어 능력을 입증하는 방법은?

- 한국어 능력 입증 방법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외에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세종학당 수료증, 교육부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수료증 등이 있습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이수 단계가 상향함에 따라 다른 기관의 증명서류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준의 단계를 이수해야 합니다.

시행 시기		현재~'26.12.31.	'27.1.1~'28.12.31.	'29.1.1.~
제출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1단계 이수 이상	2단계 이수 이상	3단계 이수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	21점 이상	41점 이상	61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1급 이상	2급 이상	3급 이상
	세종학당 수료증	초급 1B	초급 2B	중급 3B
	교육부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수료증	2단계	3단계	4단계

11. 한국어 능력 향상 등 사회통합 교육 강화에 따라, 한국어가 서툰 동포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사회·경제 활동이 활발한 연령(14~59세)의 동포에게 한국어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동포에 대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참여를 통해 최대한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학습을 계속하는 동포(사회통합프로그램 등록·수강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만 13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사람, 국내 초·중·고교 재학자,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한국어 입증이 면제되고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12. 한국어 우수자에 대한 영주권(F-5) 취득 시 소득기준은?

- 통상 동포 영주권(F-5) 신청 시 생계유지 능력 확인을 위한 소득요건으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 한국어 우수자(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국내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한 자, 국내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는 전년도 GNI의 70% 이상 충족 시 동포 영주권(F-5) 신청 시 소득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13.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 영주권(F-5) 취득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일정 수준의 자원봉사 실적*이 있다면 동포 영주권(F-5) 신청 시 소득요건이 GNI의 80%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 (자원봉사 실적 기준) 자원봉사 1365 포털시스템의 '실적확인서'로 6개월 이상에 걸쳐 봉사시간 100시간 이상 확인되는 자에 한함 (1일 봉사시간 최대 6시간까지 인정)

- 또한, 한국어 우수자가 자원봉사실적을 충족할 경우에는 동포 영주권(F-5) 신청 시 소득요건이 GNI의 60%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14. 재외동포(F-4) 자격 변경 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나요?

- 동포들의 국내 정착 초기 단계에서 범죄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재외동포(F-4) 거소신고나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신청 전에 조기적응프로그램(5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5시간) 기초법·질서, 필수 사회적응 정보, 범죄예방교육, 산업안전교육, 국내정착

-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 위반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체류기간 연장 신청 전까지 한시적으로 이수 의무를 유예하며,
-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장기체류 자격으로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이전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사람, 중증장애인은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가 면제됩니다.

15. 재외동포(F-4) 비자는 동포라면 누구라도 받을 수 있나요?

- 살인, 강도, 마약, 보이스피싱 범죄 이력 등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16.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일선 출입국관서의 민원 혼잡을 막기 위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신청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일반 체류허가 민원과 동일하게 방문예약을 통한 방문 신청,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17. 동포 체류자격 통합 정책 시행으로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는 어떻게 되나요?

- 지역특화동포(F-4-R) 비자는 인구감소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며, 일반 재외동포(F-4) 비자와 차별화된 조건과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취업활동 제한 완화(단순노무 허용), 영주(F-5-6R) 변경 시 소득요건 완화, 동반 배우자(F-3-2R)의 단순노무 취업 허용 등

- 만일, 지역특화동포(F-4-R) 자격을 소지한 동포가 본인이 특례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 재외동포(F-4)으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18. 단기체류자격(B-1, B-2, C-3 등)으로 입국한 독립국가연합(CIS) 출신 7개국* 동포도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가요?

* (7개 국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CIS 출신 7개국 동포가 과거에 '동포(C-3-8, H-2, F-4) 사증'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으면 동포임을 입증 시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19. 재외동포(F-4)가 국내 초중고교를 마치고 성년이 되면 동포가 아닌 그의 부 또는 모의 경우 출국해야 하나요?

- 재외동포(F-4)의 연령(성년/미성년 여부)에 상관없이 동포가 아닌 그의 부 또는 모는 방문동거(F-1-9)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과거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사증 신청 시, 재외공관에 동포입증서류를 제출했는데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신청할 때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 현재 국내에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가 과거 재외공관에 동포입증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국내에서는 동포입증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는 경우 동포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현재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가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신청 시 아포스티유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영사 확인은 면제됩니다.
- 동포방문(C-3-8)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자격변경을 신청할 경우 동포입증서류에 아포스티유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1. 과거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사증 신청 시, 재외공관에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신청할 때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 사증 발급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추가로, 재외공관 사증발급 또는 국내에서 다른 자격으로 변경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등록외국인, 만 60세 이상인 사람 등은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4. 알기쉬운 외국국적동포 업무 매뉴얼의 '[별첨1]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현재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 중이고 체류기간은 '29. 2.월에 만료됩니다. 재외동포(F-4) 자격변경을 신청하고 싶은데, 한국어능력 입증서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재외동포(F-4) 자격변경을 하면 체류기간이 줄어드나요?

- 방문취업(H-2) 자격에서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신청 시, 한국어 능력 미입증자라 하더라도 기준 방문취업(H-2) 체류 허가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과거 법위반 여부 등 개별 상황에 따라 최대 3년 내에서 체류기간이 달리 부여될 수 있습니다.

23.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후, 숙박시설(호텔, 모텔)의 청소원으로 일하는 경우 처벌받나요?

- 원칙적으로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는 호텔 등 숙박시설 청소원, 오피스텔 청소원, 원룸청소원 등 건물 청소원(94110)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고, 취업제한 직업에 종사하여 적발되는 경우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재외동포(F-4) 제한 직업이더라도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할 당시 최근 3개월 이상 방문취업(H-2) 취업허용업종에서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개시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으니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4.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를 통해 상담과 통역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에서도 상세한 안내와 고충 상담이 가능합니다.